

■ 최신 판례 ■

[금융] 착오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이행규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사실관계

M사는 2010년 6월 1일 거래처인 C사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려고 했으나, 착오로 상호가 동일한 C'사의 계좌(계좌개설은행 : 甲은행)로 해당 대금을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C'사는 2008년 12월 31일에 이미 부도로 폐업한 회사로서, 甲은행은 C'사의 甲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C'사의 계좌에 물품대금이 (착오로) 입금되자, 甲은행은 2010년 6월 4일 C'사 및 甲은행 사이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에 따라 C'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 C'사의 甲은행에 대한 위 예금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결과 C'사의 계좌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M사는 甲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송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甲은행은 M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① M사의 손해(착오송금액) 및 甲은행의 이익(본건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C'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M사는 甲은행에 대하여 해당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② 甲은행은 인터넷뱅킹 운영으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공적인 기능

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착오송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화로 하여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으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면서, 甲은행은 M사에게 위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2036 판결 참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법리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즉,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도 甲은행이 C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행한 상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참고 판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기본법리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을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